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요인과 감독방안

2008. 12. 26

이민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 검토배경

2.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3.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요인

4. 위험제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5.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검토배경

복합금융그룹의 연이은 경영위기 발생

❖ 자회사인 AIGFP의 부실심화로 AIG그룹 전체의 경영여건 악화

- AIGFP가 투자자에게 CDS(약 4,410억 달러로 추정)를 매도한 결과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로 상각액이 증가하면서 AIG그룹 전체의 신용도 하락
- 결국 미연준으로부터 최대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 파산위기 모면

❖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과 구조화투자회사(SIVs)의 부실로 시티그룹 파산위기

- SIVs를 통해 CDO를 비롯한 부동산 파생상품에 투자(07년 기준 493억 달러)한 결과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하면서 유동성 및 지급불능 위험 증가
- 미정부는 부실자산인수프로그램(TARP)에 따라 2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3,060억 달러의 대출에 대한 지급 보증 표명함으로써 위기 해소

❖ 과거에도 베어링사, BCCI도 금융사기 등을 이유로 파산

❖ 최근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단일 금융회사에 비해 복합금융그룹의 위험노출도가 크다는 사실에 대해 새롭게 인식

→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2.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은행 또는 증권, 보험의 2개이상 금융업을 수행하는 그룹을 지칭 (Financial Conglomerate, Large and Complex Financial Institutions)

EU

- 복합금융그룹에 관한 지령(Directive 2002/87/EC)에 따라 다음 3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복합금융그룹으로 정의
 - 그룹 내에 은행 또는 증권이나 보험이 존재
 - 금융업이 그룹내 최상위 기업이거나 금융업이 그룹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
 - 은행, 증권, 보험 각각이 금융업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거나 은행, 증권, 보험 중 작은 업종의 자산이 60억 유로를 넘을 것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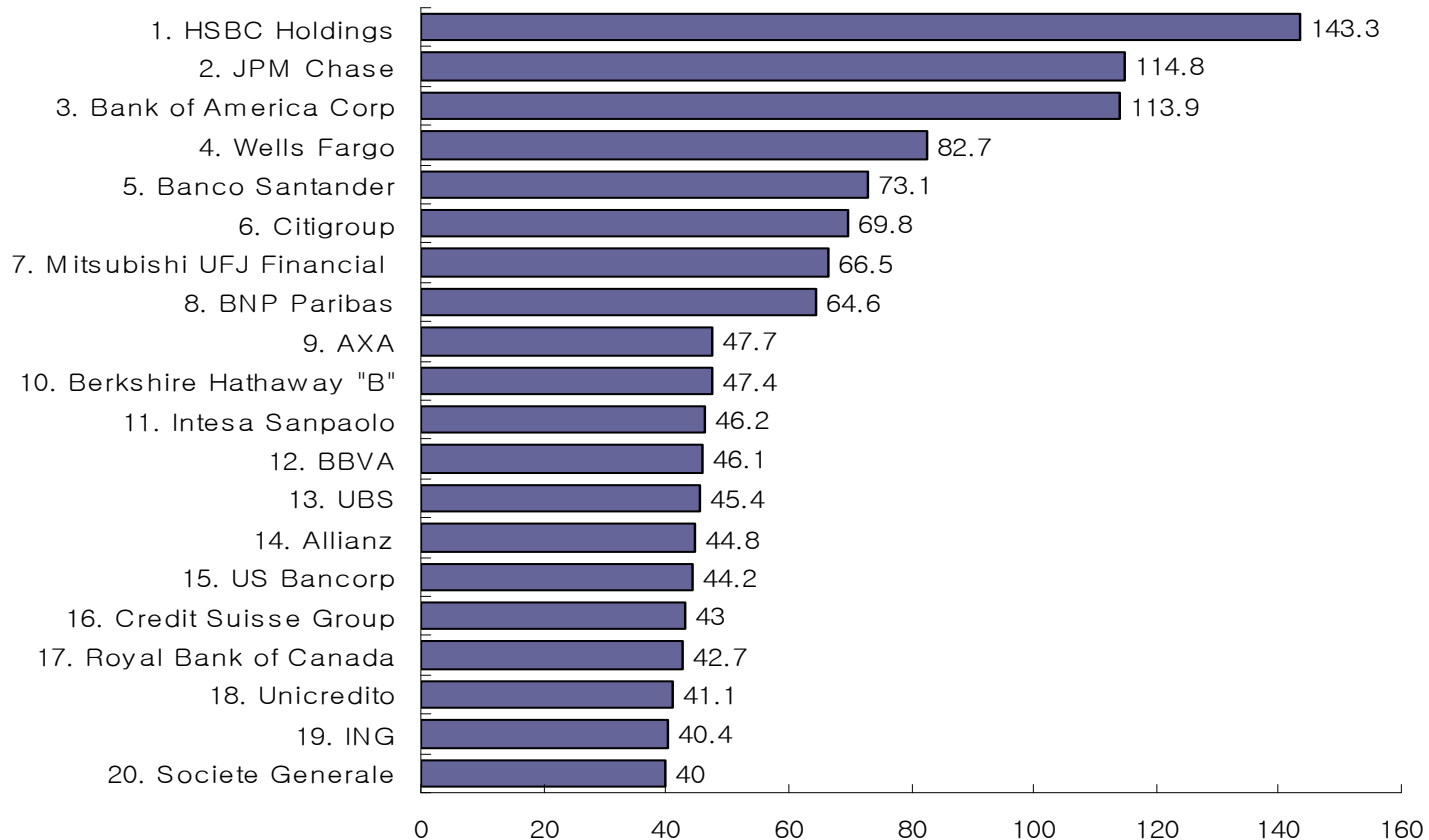
- 금융청 조직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다음의 4가지에 속하는 그룹을 복합금융그룹으로 지칭
 - 금융지주회사그룹, 사실상의 지주회사그룹, 금융기관모회사그룹, 외국지주회사그룹

미국, 우리 나라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세계 복합금융그룹 순위>



주 : 시장가치기준, EUR billion

자료 : MSCI, Bloomberg, 2008.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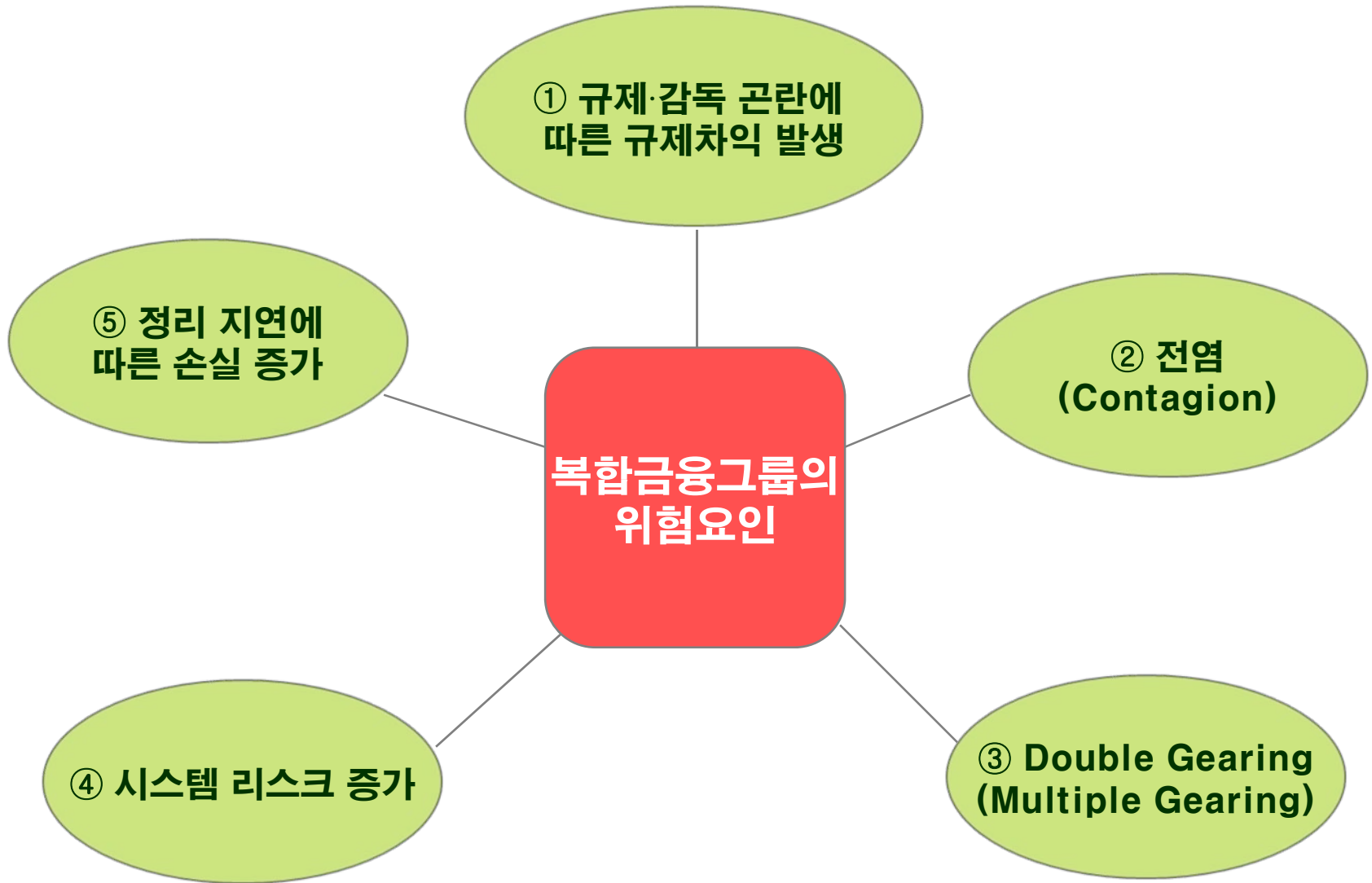
2. 복합금융그룹의 정의

< 우리나라의 복합금융그룹 현황 >

(2008년 12월 현재)

계 열	그룹 명	소속 금융회사			
		은행	증권	보험	기 타
금 융 지 주	우리금융지주	<u>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u>	<u>우리투자증권</u>	<u>우리아비바생명</u>	우리CS자산운용, 우리파이낸셜,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우리에프앤아이, 우리프라이빗에쿼티
	신한금융지주	<u>신한은행, 제주은행</u>	<u>굿모닝신한증권</u>	<u>신한생명, SH&C생명</u>	신한신용정보, 신한캐피탈, 신한카드, 신한프라이빗에 쿼티,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 신한맥쿼리금융자문
	하나금융지주	<u>하나은행</u>	<u>하나대투증권</u>	<u>하나 HSBC생명</u>	하나캐피탈, 하나아이앤에스
	한국투자금융 지주	-	<u>한국증권</u>	-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밸류 자산운용, 한국투자파트너 스,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한국투자저축은행
	KB금융지주	<u>KB국민은행</u>	<u>KB투자증권</u>	<u>KB생명</u>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데이터시스템, KB선물
은 행 계 열	농 협	<u>농협</u>	<u>NH투자증권</u>	농협공제	NH-CA투자신탁운용, NH투자선물
	산업은행	<u>산업은행</u>	<u>대우증권</u>	-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생 보 계 열	삼 성	-	<u>삼성증권</u>	<u>삼성생명, 삼성화재</u>	삼성카드, 삼성투신운용, 삼성벤처투자
	한 화	-	<u>한화증권</u>	<u>대한생명, 한화손해보험</u>	한화투자신탁운용, 한화기술금융
	교 보	-	<u>교보증권</u>	<u>교보생명, 교보자동차보험</u>	교보투자신탁운용, 생보부동산신탁
손 보 계 열	동부	-	<u>동부증권</u>	<u>동부화재, 동부생명</u>	동부캐피탈, 동부자산운용
	메리츠	-	<u>메리츠증권</u>	<u>메리츠화재</u>	<u>메리츠증권</u>
증 권 계 열	미래에셋	-	<u>미래에셋증권</u>	<u>미래에셋생명보험</u>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 맵스 자산 운용
	동 양	-	<u>동양증권</u>	<u>동양생명</u>	동양투자신탁운용, 동양파이낸셜, 동양캐피탈, 동양창 업투자, 동양선물

3.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요인



3.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요인

① 규제·감독 곤란에 따른 규제차익발생

❖ 금융권별 규제가 개별감독규제를 채용함에 따른 규제차익 발생

→ 금융권별 규제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동일한 리스크에 대해서 필요요구 자본량이 상이하어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이를 활용한 이익추구 행위가 발생

예) 1. 투자은행의 감독을 담당하는 SEC가 04년 4월 자기자본비율을 상업은행의 1/3으로 완화하여 투자은행 부실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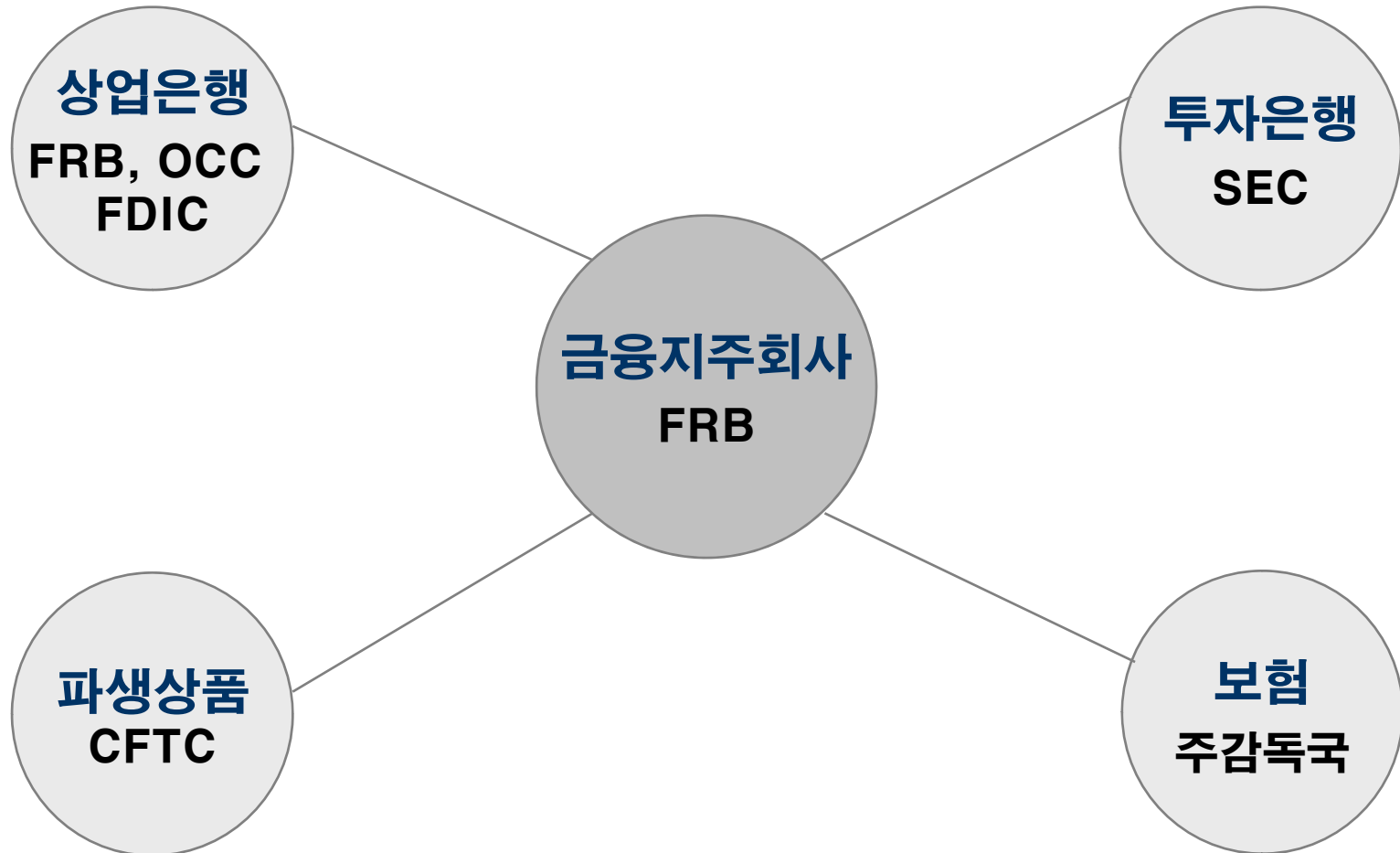
2. 씨티그룹의 경우 CDO 등에 투자할 때 엄격한 은행자기자본규제를 피하기 위해 SIVs등 독립된 자회사를 설립하여 규제 회피

→ 금융상품의 복합화 등이 이루어지고 글로벌한 전개가 보편화됨에 따라 감독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품 및 회사가 등장

예) AIG의 경우 뉴욕주 감독이 미치지 않는 런던에 금융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자회사 설립

3.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요인

<미국의 금융감독 체계>



3.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요인

② 전염효과(contagion)

❖ 금융기관의 부실이 그룹전체 및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

– 금융기관의 부실이 금융그룹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위험이 확산되는 현상

❖ 힘의 원천의 법칙(source of strength doctrine)이 적용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상환의무가 발생할 가능성(법률적 소송 가능)

→ Joint Forum은 전염의 유형을 다음 두 가지로 구분

1) 심리적 요인에 의해 시장 참가자들이 특별한 근거 없이 금융그룹 내 특정 자회사의 문제를 전체 문제로 인식하여 다른 회사에 까지 전염시키는 것으로 그룹내 부실이 발생하면 이러한 부실이 부실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회사에 까지 확산

예) AIG본사가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일본, 한국 등 AIG자회사에 대한 해약사태 발생으로 영업 여건 위축

2) 금융그룹내 신용보증, 상호출자, 차입 등으로 인한 그룹 내 익스포저 증가로 부실이 전체 그룹으로 전이

예) 씨티그룹의 경우 자회사 등이 채권(ABCP 등)을 발행할 때 높은 신용등급을 얻기 위해 모회사와 신용공여 보증(back-up)계약을 체결하여 그 결과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 및 그룹 전체의 부실로 확산

3.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요인

③ Double Gearing(Multiple Gearing)

❖ 동일한 자본이 복수로 계산되어 자기자본이 과대평가

-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을 산출할 경우 자회사간 출자분을 상쇄하지 않고 단순 합산함으로써 그룹별(Group-Wide)자본량이 실제 자본량보다 과다하게 평가되는 경우를 지칭
- 또한 과다한 레버리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자회사의 자본량이 과다하게 평가

Double Gearing

모회사

필요자기자본	부채
120	60
자회사지분	자본
100	40

자회사

100%보유

	자본
필요자기자본	(모회사보유)
80	100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기자본 창출

모회사(지주회사)

	부채
자회사지분	60
100	자본
	40

자회사

100%보유

	자본
필요자기자본	(모회사보유)
80	100

3.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요인

④ 시스템 리스크 증가

- ❖ Too Big To Fail, Too Complex To Fail 로 인해 부실발생시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회복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요

- 복합금융그룹은 대형화, 복합화의 특징이 있으므로 Too Big To Fail, Too Complex To Fail로 인해 부실발생시에도 구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기시정조치가 배제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
- 금융산업의 집중도 증가는 개별금융기관에 대해 서로 연관성이 높은 위험을 추구하도록 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 가능성 상승(De Nicolo et al.2003)
예) 서브프라임사태, 자산버블(일본), 신용카드 사태
-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크기에 관계없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는 결국 시스템위험의 증가로 귀결(Herring, 2002)
예) AIG, 씨티그룹 등에 대해 시스템위기 발생을 이유로 구제금융실시

3.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요인

⑤ 정리 지연에 따른 손실 증가

- ❖ 국가별, 채권자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여 부실 발생시 처리가 지연되고 그 결과 정리비용 증가

→ 복합금융그룹 파산시 국가별, 금융기관별 정리방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도 다양하여 합의달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정리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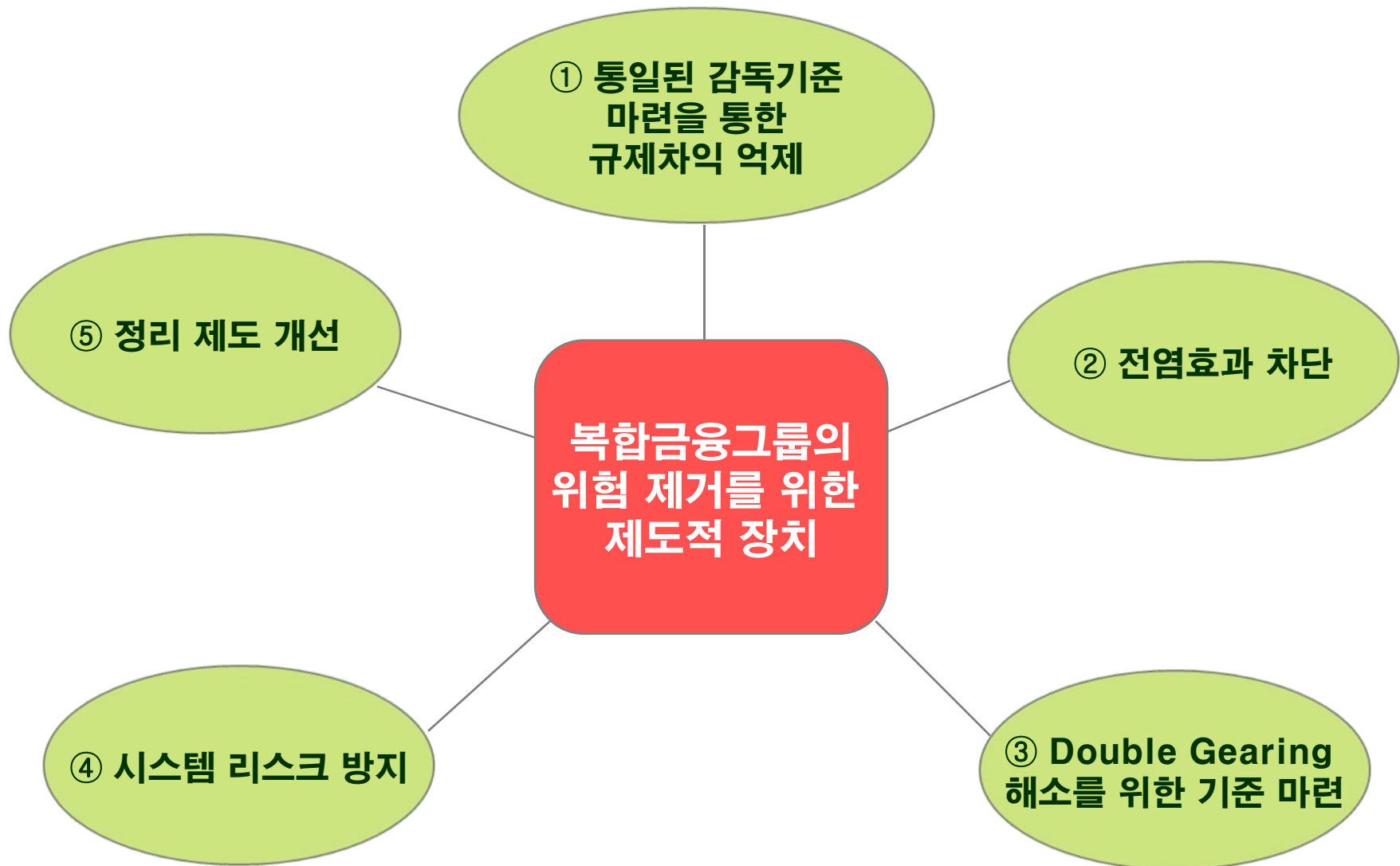
<베어링사의 기간별 잠재부실 추이>

(단위 : million £)

	01/07/1992 ~31/12/1992	01/01/1993 ~31/12/1993	01/01/1994 ~30/06/1994	01/07/1994 ~31/12/1994	01/01/1995 ~27/02/1995
전기 손실	—	2	23	116	208
손실	2	21	93	92	619
총손실	2	23	116	208	827
1995년 2월 27일 이후 시장변 동상황에 따른 추가적 손실					42
외환손실(¥ against £)					55
SIMEX costs					3
총손실(파산 후)					927

자료 : Jan Kornert, "The Barings crises of 1890 and 1995: causes, courses, consequences and the danger of domino effects",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money*, 2002.1.

4. 위험제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4. 위험제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① 통일된 감독기준 마련을 통한 규제차익 억제

❖ 금융권별 규제차이에 따른 차익발생 억제를 위한 감독제도 마련

- 은행, 증권, 보험 등 자본금규제 방법이 상이한데 따른 차익을 없애기 위해 자본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
- ✓ 자기자본을 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 보험의 경우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정의하는 등 업권간 기본적인 개념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 진행 중

② 전염효과 차단

❖ 리스크집중과 복합금융그룹내 거래에 대한 제한

- 은행, 증권의 익스포저를 외부의 경우는 자기자본의 25%, 내부의 경우는 20%로 제한하고 10%를 넘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보고를 의무화(EU 은행지침, 2000)
- 복합금융그룹에 대해서는 복합금융그룹지침(2002)를 통해 리스크집중과 그룹내 거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4. 위험제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③ Double Gearing 해소를 위한 기준 마련

❖ 복합금융그룹의 위험자본 산출

- Basel II의 금융그룹 규제자본 접근법
- ✓ Joint Forum 접근법에 의해 측정된 자기자본에 추가적으로 자산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Double Gearing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기준으로 자기자본 계산
- 경제적 자본 접근법
- ✓ 이론적 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을 측정하고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이론적 방법론에 기초하여 위험을 가감하는 방법으로 계산
- Joint Forum의 필요자본대비 자기자본비율 접근법
- ✓ Double Gearing, 초과 레버리지, 비규제자회사의 존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금융그룹의 자기자본 합산방식으로 빌딩블록(building block) 접근법, 리스크기반 합산(risk-based aggregation) 접근법 그리고 리스크기반 공제(risk-based deduction) 접근법 중 하나를 채택하도록 권고

4. 위험제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④ 시스템리스크의 방지

❖ 감독기구별, 국가별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감독기구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G20)

- 각 금융안전망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시스템 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한편 BIS, G20 등을 통한 긴밀한 협조로 시스템 위기 전염 가능성 차단

⑤ 정리 제도 개선

❖ 각 규제당국이 위기시 복합금융그룹을 원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각국별로,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정리제도를 재점검하여 부실발생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점 검토(G20)
- EU의 경우
 - ✓ 채권자의 비중이 가장 큰 회원국 법원에서 자국법에 따라 파산절차 개시(지급불능규칙)
 - ✓ EU회원국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파산절차는 본국의 법률에 의해 처리(보험 수취기관 및 신용기관의 정리 지침)

5.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개선방안

복합금융그룹의 감독 여건 비교

❖ 통합감독체계의 운영

- 감독기구가 분리된 미국에 비해 금융환경 악화 등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

❖ 주력금융회사의 높은 비중

- 은행, 보험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대부분 주력금융회사의 비중이 높아 주력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룹전체의 리스크관리가 용이

❖ 계열사간 엄격한 사전 규제

- 계열금융사에 대한 출자 및 상호보증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위험전이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가능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개념 미확립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아 통합적인 리스크관리 및 감독제도 부재로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응 곤란

5.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복합금융그룹의 권역별 구성>

(2006년 12월말 기준)

계열	그룹명	총자산 구성비율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기타
금융 지주	우리지주	93.83	—	6.17	—	—
	신한지주	93.10	—	2.51	4.39	—
	하나지주	96.26	—	3.18	0.56	—
	한국지주	—	17.51	82.49	—	—
은행 계열	국민은행	94.92	—	—	5.08	—
	농협	99.26	—	0.74	—	—
	산업은행	91.91	—	8.09	—	—
생보 계열	삼성	—	—	5.38	94.62	—
	한화	—	—	4.07	95.93	—
	교보	—	—	2.67	97.33	—
손보 계열	동부	—	7.64	6.62	85.74	—
	메리츠	—	—	16.73	75.14	8.13
증권 계열	미래에셋	—	—	34.23	65.77	—
	동양	—	—	55.95	44.05	—

5.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개선방안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

유형		한도	근거
신용공여	동일차주 신용공여	자기자본순합계액의 25%	법45조 ①항
	동일인 신용공여	자기자본순합계액의 20%	법45조 ②항
	주요출자자 신용공여	자기자본순합계액의 25%	법45조 ③항
내부거래	자회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 지	법48조 ①항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개별) 자기자본의 10%	령27조 ③항
		(전체) 자기자본의 20%	
	불량자산 내부거래 금지	금 지	법48조 ③항
	자회사간 상호주식보유 금지	금 지	법48조 ①항
출자한도	지주회사의 유가증권투자한도	(자기자본 - 자회사출자액)	법43조
	지주회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제한	타사발행주식 총수의 5%	법44조 ①항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	자기자본	법46조
지도비율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기자본의 200%	공정거래법 8조의2
	비은행지주회사의 필요자기자본비율	필요자본의 100%	법50조(감독규정25조)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자기자본비율	8%	법50조(감독규정25조)
	지주회사의 유동성비율	(원화) 100%	법50조(감독규정25조)
		(외화) 80%	
	지주회사 외화자산 만기 GAP	(잔존만기 7일 이내) 0% 이상	법50조(감독규정25조)
	(외화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잔존만기 1개월 이내) 10%이상	법50조(감독규정25조)

5.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개선방안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유형	내용	근거
상호출자	금지	법 제9조 제1항
출자총액한도	순자산액의 25%	법 제10조 제1항
채무보증	금지	법 제10조의2
의결권	의결권 제한	법 제11조

5.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개선방안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감독제도 마련

❖ 최근 글로벌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지주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복합금융그룹에 있어서도 위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모자그룹, 계열그룹의 경우 통합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함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포괄적 연결기준 감독제도 도입

❖ 복합금융그룹을 포괄하는 연결감독제도 시행

- 현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은행자회사는 연결 BIS기준을 채용하고 있으며 비은행자회사는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운용하고 있으나 복합금융그룹 전체를 포괄하는 연결감독제도 미도입
- 특히 현행 금융지주회사에서도 보험자회사에 대한 연결기준을 채용하고 있지 않아 엄밀한 의미에서 복합금융그룹의 전체위험이 고려되지 못함으로 이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5.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개선방안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및 연결재무제표 포함 여부>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회사
Basel 합의 ¹⁾	(지주회사) 규정없음 (은행자회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은행과 동등한 규제를 따르는 경우에는 연결기준. 이 경우 비연결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	(지주회사) 규정없음 (은행자회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연결대상외로 해석	(지주회사) 규정없음 (은행자회사) 연결 비연결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
Basel 2	과반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연결(단 은행과 3 동등한 규제를 따르는 경우에 한함) 비연결자회사에 대한 대주주지분 ²⁾ 은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비례연결도 가능)	연결대상외 보험회사에 대한 과반수이상 출자지분 및 대주주지분은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단 국내규정에서 보험회사가 은행에 대한 출자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를 위험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음)	과반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연결대상 비연결회사에 대한 대주주지분은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비례연결도 가능)
EU ³⁾ (Basel2 전제로 한 자기자본 개정안)	과반이상 보유한 경우 연결 출자비율 10%를 초과한 출자 또는 출자비율 10%이내이면서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의 10%을 넘지않는 출자는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	연결대상외 출자비율 20%이상의 출자는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	과반이상 보유한 경우 연결 출자비율 10%를 초과한 출자 또는 출자비율 10%이내이면서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의 10%을 넘지않는 출자는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

5.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개선방안

	증권회사	보험회사	기타 금융회사
미국 ⁴⁾⁵⁾	과반이상 보유한 경우 연결 단, 감독당국이 비연결로 하는 것이 감독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연결대상외	과반이상 보유한 경우 연결 단, 감독당국이 비연결로 하는 것이 감독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연결대상외	과반이상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결(연결대상외의 경우 비연결회사에 대한 출자는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 출자비율 20-50%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지주회사,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하고 비레연결 또는 연결
일본	과반이상 보유한 경우 연결 특정조건하에서는 연결대상외이며 출자는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 출자비율 20%이상의 경우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출자를 공제하고 일정요건하에서는 비레연결	연결대상외 출자비율 20%이상의 경우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출자 공제 ⁶⁾	과반이상 보유한 경우 연결 특정조건하에서는 연결대상외이며 출자는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공제 출자비율 20%이상의 경우 지주회사 또는 은행의 자기자본에서 출자를 공제하고 일정요건하에서는 비레연결

주 : 1) 자현행 합의에서는 연결, 비연결의 기준이 되는 출자비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2) 대형소수지분의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50%로 제시되어 있음

3) EU에서는 은행과 증권회사에 동일한 자기자본규제를 적용

4) 총자산 1.5억달러 이상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5) 미국에서는 금융지주회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지주회사로서 FRB에 등록하면 증권, 보험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음. 이 경우 증권,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각 분야의 감독당국이 부과하는 자기자본규제에 따름 그리고 그룹전체의 자기자본은 금융지주회사를 담당하는 감독당국이 검증

6) 연결 또는 공제의 기준은 의결권의 보유비율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호회사형태의 보험회사에 대한 기금각출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5. 우리나라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정리지연 등에 따른 손실 방지책 마련

- ❖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이해당사자간 조정 곤란으로 정리가 지연되는데 따른 손실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이해당사자간 갈등으로 신속한 정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금융그룹의 경우 국내 금융소비자 등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 존재하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

권역간 규제차이 등을 조절하는 상위기구 설치

- ❖ **금융감독기구에 금융권별 규제차이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발생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상위기구 설치**

- 업권간 국가간의 규제차이를 상시 감시하고 이러한 규제차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위기구를 설치함으로써 규제차이 등에 따른 부실 전이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